

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백색
- 2)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백색 또는 호박색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것

나) 차폭등이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차폭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차폭등의 수평위치에 다른 전방등화가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차폭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앞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차폭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 1) 배기량이 50cc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 2)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같은 측면의 차폭등은 소등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1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